

# FRP,PE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보호벽이란?

## 1. 왜 보호벽이 필요가?

### a. 설치 근거 (하수도법)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11.2.17>

[링크: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요약 ->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가. 외압·하중 및 지반상태 등을 고려한 시설의 구조·강도에 관한 부분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14.7.16>

[링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요약 -> 12. 콘크리트 외의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바닥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의 하중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해당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라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b. 보호벽이 없을 때 발생 되는 문제점

- 차량 & 상부 토사등의 하중으로 인한 파손 그리고 **안전& 수질오염**



-아래: 관련뉴스 링크-

↓↓↓↓

[부실시공 정화조' 결국 사고](#)

[주먹구구식 시공 현장](#)

[디지털 사진조작 실태](#)

[정화조 날림시공,적당히 넘겨선..](#)

[불.탈법 부추기는 공직사회](#)

["정화조 부실시공 공무원이.."](#)

[주차장이 내려 앉으며....](#)

[동영상: "사고" 부실시공](#)

(사진-1 부실시공 “보호벽”)

## 2. 보호벽의 설치 기준은?

### a. 관련 법률

- 하수도법: 외압·하중 및 지반상태 등을 고려한 시설의 구조·강도로 개인하수설계시공업자가 설계·시공하도록 규정
- 건축법: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b. 관련 질의&답변

2014.12.10. 23:59:59

#### 정화조 보호용 콘크리트 구조물

건축물 옥외의 부설주차장및 차도 하부에 FRP 정화조를 설치 하고자 합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3 , 12항의 규정에 콘크리트 외의 경우 시설물의 상부 측면의 하중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해당 시설물의 상부 측면에 슬라브및 보호벽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의 규정에 따라 보호벽을 설치 하고자 합니다.

-질의-

- 1) 위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 하여야 되는지?
- 2) 위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되는지?
- 3) 건축법 제 91조의 3에 해당되는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적용여부는?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정화조설치를 위한 보호벽설치가 상기규정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될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여부는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도면등 관련자료를 갖추어 당해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법령 소관부서인, 우리부 녹색건축과(044-201-3771)로 문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있으실 것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정재엽(044-201-475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14.12.22. 18:26:25

정화조 보호벽 설치시 건축설비기준의 준수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의 2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입니다..

옥외 부설 주차장 하부에 FRP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며, 관련법(하수도법)에 따라 콘크리트 등으로 보호벽을 설치 하고자 합니다..콘크리트 구조체에 FRP정화조를 매설하는 경우로 구조, 안전 및 수선.교체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질의-

1) FRP정화조를 배수및 오물처리설비로 봐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관한 규칙 제3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되는지?

2) FRP정화조를 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로 봐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를 준수하여야 되는지

○ 답변내용

- 질의1) 정화조의 경우 오물처리설비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 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조항으로 귀하께서 언급하신 정화조의 경우 건축설비로 판단할 수 있는 바 이 기준을 준용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3771, 담당 최철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